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4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이소영·김남근・박용갑

박지원 · 김태년 · 복기왕

조승래 · 염태영 · 김성회

채현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, 이미 경·공매가 종료되었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,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으면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·정지,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·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·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3항).
- 나. 공공주택사업자가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 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함(안 제25조제4항).
- 다.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2제1항).
- 라.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의2제1항).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유예·정지"를 "유예 또는 정지"로 한다.

제25조제3항 중 "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경매절차의 유예·정지,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 및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 중인경우"를 "다음 각 호의 사항을"로, "절차의 속행을 요청할 수 있다"를 "요청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·정지,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·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·중지
- 2.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·정지,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·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·중지 중인 경우 그 절차의 속행

제2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.

제25조제1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1항

및 제12항으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

제25조의6제1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"를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 사"로 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"를 "시·도지사"로 한다.

제29조의2제1항 중 "제4장"을 "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, 제4장"으로 한다.

제30조 전단 중 "주택도시보증공사"를 "주택도시보증공사, 공공주택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17조(경매의 유예·정지) ①	제17조(경매의 유예·정지) ① -	
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		
「민사집행법」 제78조 또는		
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		
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「채무		
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		
률」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		
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		
경우를 포함한다) 전세사기피		
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		
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		
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		
절차의 <u>유예·정지</u> (이하"경매	<u>유예 또는 정지</u>	
유예등"이라 한다)를 신청할		
수 있다.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
제25조(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	제25조(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	
기피해주택 매입) ①・② (생	기피해주택 매입) ①・② (현	
략)	행과 같음)	
③ 제2항에 따라 우선매수할	3	
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		
택사업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		
주택에 대하여 <u>제17조부터 제1</u>	<u>다음 각 호의</u>	
9조까지에 따라 경매절차의 유	<u>사항을</u>	

예·정지,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 및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 중인 경우 법원,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절차의 속행을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 제2항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 택사업자가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국세징수법」 또 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「공 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---- 요청할 수 있다.

- 1.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·정지,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·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·중지
- 2.
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

 유예·정지, 제18조에 따른

 매각절차의 유예·정지 또는

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

 유예·중지 중인 경우 그 절

 차의 속행

4

공급하되, 해당 주택의 전세사 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,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⑤ ~ ⑩ (생 략)

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.

<u>⑩</u>·<u>⑪</u> (생 략)

제25조의2(공공임대주택 지원) 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 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

<u>다만</u> ,
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
<u>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민</u>
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국
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
법」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
로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
<u>할 수 있다.</u>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
① · ② (현행 제12항 및 제13 항과 같음)

제25조의2(공공임대주택 지원) 제25조의2(공공임대주택 지원)

① -----

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5조 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 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우선 공급 할 수 있고, 그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제25조의6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 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 다)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 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 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는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「건축법」 위반 사항과 관련 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
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
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
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
못한 전세사기피해자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5조의6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
례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
<u>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</u>
<u>치도지사</u>

명령,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 금 부과 또는 제85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다.

② ~ ⑨ (생 략)

제29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
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
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</u>
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
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・③ (생략)

제29조의2(자료의 협조요청) ①
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자료로서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현황, 「민사집행법」 제78조 또는 같은 법제264조에 따른 경매 현황(「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」 제496조제1항 또는같은 법제497조에 따라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「국세징수법」 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현황에

· 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29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
①
<u>시·도지사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2(자료의 협조요청) ①
제29조의2(자료의 협조요청) ①
제29조의2(자료의 협조요청) ①
금융기관 등의 보전
금융기관 등의 보전 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
금융기관 등의 보전
금융기관 등의 보전 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
금융기관 등의 보전 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
금융기관 등의 보전 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
금융기관 등의 보전 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 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, 제4장
금융기관 등의 보전 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 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, 제4장
금융기관 등의 보전 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 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, 제4장

관한 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 처장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 의 장,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 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30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 7 국토교통부장관(제29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·위탁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), 주택도 시보증공사, 제11조에 따라 전 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하는 자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 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은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제 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주민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
제30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	
제30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	
제30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 	
제30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 주택도	
 <u>주</u> 택도	

등록번호를 포함한다)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· 이용·처리할 수 있다. 이 경 우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 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 다.

•	
•	